

일반휴학원서

결재	담당	계장	처장	부총장	총장
			전결		

학과			학번			성명		
주소	※ 북학안내문 발송을 위해서 주소 변경시 즉시 KISS에서 변경해 주세요.					휴대전화		
현재 학적상태	☐ 재학중 ☐ 일반휴학중 ☐ 군입대휴학중 ※ 재학기간 중 일반휴학 최대 3회까지만 가능					휴학학기 등록여부	☐ 등록 ☐ 미등록	
휴학사유	☐ 가정형편 ☐ 입대에정 ☐ 질병 ☐ 기타()		일반휴학 횟수	회 최대3회		복학예정 학기	학년 학기	
복학시 등록금 납부관계	등록 면제 (수업일수의 1/4 이전)	1/3 납부 (수업일수의 1/2 이전)		1/2 납부 (수업일수의 3/4 이전)		전액 납부 (수업일수의 3/4이 지난 날)		
	㉠	㉠		㉠		㉠		
※ 장학금이 있는 경우 해당학기에 등록하지 않을 시 장학금은 소멸됩니다.								
휴학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 ※ 일반휴학 신청일부터 ~ 1학기 복학의 경우 2월 28일까지 / 2학기 복학의 경우 8월 31일까지							

상기 본인은 학칙 제22조에 의거 휴학원서 및 사유서를
보호자 연서로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인)

보호자 (인)

지도교수 (인)

학과장 (인)

경유

도서관

㉠

두원공과대학교 총장 귀하

유의사항

- ◆ 북학안내문 발송을 위해서 주소 변경시 즉시 KISS에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◆ 병무청 공지사항 : 휴학을 해도 본인이 입영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입영 연기자로 관리됩니다. 군 입대를 목적으로 휴학하는 학생은 먼저 입영신청을 하고, 입영일자가 결정된 후 휴학을 해야 학업공백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.
- ◆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학기개시일 전 휴학기간에만 일반휴학이 가능합니다.
- ◆ 재학기간 중 일반휴학은 1회에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3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.(질병 사유 제외)
- ◆ 질병 사유로 일반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4주 이상의 종합병원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- ◆ 휴학기간 종료 후 3주가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24조에 의해 제적됩니다.
- ◆ 신입생으로 1학년의 경우 질병 사유 이외에는 일반휴학 할 수 없습니다.
- ◆ 일반휴학은 휴학시기와 관계없이 성적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.
- ◆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1/4이 지난 날 휴학하는 자는 수업일수에 따라 복학하는 학기에 등록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.
① 수업일수의 1/2 이전 : 등록금의 1/3 ② 수업일수의 3/4 이전 : 등록금의 1/2 ③ 수업일수의 3/4이 지난 날 : 등록금 전액
- ◆ 휴학 중 지퇴자의 등록금 반환은 『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』에 의해 처리합니다.(등록금납부자만 해당)
- ◆ 일반휴학기간 중 군입대를 할 경우에는 입영통지서를 학시운영처에 제출하고 휴학사유를 변경하여야 합니다.

접수자

성명기재

전산번호

일반휴학사유서(보호자연서)

년 월 일

신청인 (인)

보호자 (인)

지도교수의견서

년 월 일

지도교수 (인)